

第 26 回 達西區議會 (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附錄) 第 1 次

大邱直轄市 達西區議會 事務課

目 次

- 1. 大邱直轄市 達西區議會 事務課 設置 및 事務職員 定數 에 關한 條例 中 改正 條例 (案) 6 面
- 2. 本會議場 議席 配置 圖 9 面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94. 6

제 출 자 : 김영수 의원의 5인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자함.

2. 주요골자

- 사무기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의 하부조직으로 의정계를 신설
- 사무직원의 정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2명 증원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중 "전문위원과 의사계"를 "전문위원과 의정계 및 의사계"로 한다.

제3조 중 사무직원 정수는 다음에 "16명"을 "1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6월 10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조직)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u>전문위원과 의사계를 둔다.</u></p> <p>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 직원의 정수는 <u>16명</u>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전문위원과 의정계 및 의사계를 둔다.</u></p> <p>제3조(사무직원의 정수)<u>18명</u>.....</p>